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본인 근로자 양기숙 은 인간존중의 승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strike out(즉시 퇴출제)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와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준수하고,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절대 ‘나홀로 작업’을 하지 않겠으며,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1. 핵심 안전보건교육

- 1) 2m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작업발판/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뒤거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3)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4) 화기/폭발 위험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
- 5) 가설구조물(흙막이/비계/동바리/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작업과 토사 굴착의 봉괴 위험 구간 작업 시,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
- 6)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 서약

* 현장명 :

소속회사	공종 / 담당업무	성명 / 서명	교육일 / 서약일
시에스프로드나인	프로파이어/RER 설비	양기숙 /	21.02.10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본인 근로자 김태경은 인간존중의 송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strike out(즉시 퇴출제)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와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준수하고,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절대 '나홀로 작업'을 하지 않겠으며,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1. 핵심 안전보건교육

- 1) 2m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작업발판/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덮개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3)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4) 화기/폭발 위험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
- 5) 가설구조물(흙막이/비계/동바리/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작업과 토사 굴착의 봉과 위험 구간 작업 시,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
- 6)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 서약

* 현장명 :

소속회사	공종 / 담당업무	성명 / 서명	교육일 / 서약일
씨에스프로트라인	오토라밸러	김태경	24. 02. 13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본인 근로자 김종혁 은 인간존중의 승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strike out(즉시 퇴출제)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와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준수하고,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절대 '나홀로 작업'을 하지 않겠으며,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1. 핵심 안전보건교육

- 1) 2m 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작업발판/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덮개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3)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4) 화기/폭발 위험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
- 5) 가설구조물(흙막이/비계/동바리/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작업과 토사 굴착의 봉괴 위험 구간 작업 시,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
- 6)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 서약

* 현장명 :

소속회사	공종 / 담당업무	성명 / 서명	교육일 / 서약일
CSFL	기계설치/ 오토캐드	김종혁	25. 02. 13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본인 근로자 정명모 은 인간존중의 송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strike out(즉시 퇴출제)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와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준수하고,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절대 ‘나홀로 작업’을 하지 않겠으며,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1. 핵심 안전보건교육

- 1) 2m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작업발판/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뒤거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3)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4) 화기/폭발 위험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
- 5) 가설구조물(흙막이/비계/등바리/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작업과 토사 굴착의 붕괴 위험 구간 작업 시,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
- 6)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 서약

* 현장명 :

소속회사	공종 / 담당업무	성명 / 서명	교육일 / 서약일
CS 트론드라인	설치 / 오토리밸러	정명모 	25. 02. 13.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본인 근로자 나용진 은 인간존중의 송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strike out(즉시 퇴출제)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와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준수하고,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절대 ‘나홀로 작업’을 하지 않겠으며,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1. 핵심 안전보건교육

- 1) 2m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작업발판/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덮개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3)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
- 4) 화기/폭발 위험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
- 5) 가설구조물(흙막이/비계/동바리/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작업과 토사 굴착의 봉괴 위험 구간 작업 시,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
- 6)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 서약

* 현장명 : KT&G 세종현장

소속회사	공종 / 담당업무	성명 / 서명	교육일 / 서약일
<u>씨에스프로트라인</u>		<u>나용진</u> / <u>27</u>	2025. 02. 13